

#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

## 1. 지원비율

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<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>

지 원 사 업	구(區) 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	비 고(증감률)
1.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	60	40	·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·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% 증액 ·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%증액 ·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
2.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	60	40	
3. 경로당의 보수	60	40	
4.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	60	40	
5.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	50	50	
6.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	
7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	
8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·개선	50	50	
9.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	50	50	
10.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	50	50	
11.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	
12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	
13.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	50	50	
1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0	50	

## 2. 지원금의 상한액

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(지원금의 지원비율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
## 3. 지원제외 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른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다만,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)